

## 안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칙

제정 1997. 6. 26      규칙 제 6호  
일부개정 2020. 6. 26    의회규칙 제50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안양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회장 대상자) 안양시의회장(이하 “의회장”이라 한다)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안양시의회 사무국장(이하 “사무국장”이라 한다)의 제청으로 안양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결정한다. 다만,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장의위원회)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(이하 “장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장의식의 방법,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
2.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

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의장,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. <개정 2020. 6. 26>

⑤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0. 6. 26>

⑥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을 둘 수 있다.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집행위원회) ①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,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.

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안양시의회장에 관한 규칙

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 집행위원회는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 및 재무분과위원회를 두며,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을 두되, 집행위원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⑥ 집행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간사)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. <개정 2020. 6. 26>

제6조(준용) 의회장의 장의기간·장의절차·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「건전가정의례준칙」을 준용한다. <개정 2020. 6. 26>

제7조(장의비용)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. <개정 2020. 6. 26>

제8조(조기계양) 의회장일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계양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26>

부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6. 26 의회규칙 제50호>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장제비기준

사 항 별	규 격	수 량	비 고
신문광고	3단 15cm	1개사	지방일간지
영결식장 설치	건물면적 7.2m×3.2m =23.04m <sup>2</sup> 높이 3.6m	1식	7평
영 구 차	중 형	1대	1일간
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. 헌 화 나. 흥 화 다. 근조리본 라. 장 갑 마. 넥 타 이 바. 영구차 리본	특대 대 특대 대 흑색 백색 흑색 대형	1개 15개 1개 21개 300개 60족 20개 1개	장의위원장용 유족 및 집행위원장용 장의위원장용 집행위원장 및 위원용 조객용 의원, 유족 및 종사원용 종사원용
조 화	대형	1개	의장명의
안내문 인쇄	모조32절 180g/m <sup>2</sup>	500부	

